

제322회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2월14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현안보고(AI관련)
  - 가. 환경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14.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환경책임법안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기업살인처벌법안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AI 관련) ..... 6
  - 가. 환경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7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영록·김경협·백재현·김춘진·신기남·김승남·이춘석·이낙연·김윤덕·강기정 의원 발의) ..... 7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김정록·김상민·이만우·이종훈·김동완·권은희·강은희·박인숙·홍지만 의원 발의) ..... 7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재윤·배재정·신장용·양승조·우원식·윤관석·윤희중·은수미·이용섭·이원욱·장하나·정호

- 준·조정식·진성준·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 8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 8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영록·이낙연·최규성·배기운·강동원·이노근·김춘진·유승우·김광진·조정식·장하나·우윤근 의원 발의) ..... 8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전하진·김성태 의원 발의) ..... 8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미경·우원식·백재현·장하나·김경협·은수미·박남춘·한명숙·최봉홍 의원 발의) ..... 8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낙연·변재일·김춘진·김진표·김영록·김광진·정청래·배기운·이상직·강창일 의원 발의) ..... 8
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재윤·김한표·김종훈·이현재·박창식·황진하·김희정·박인숙·조명철·이철우·이노근·길정우·정우택·정갑윤·김성찬·손인춘·송영근·이한성·이에리사·李宰榮·신동우·조원진·윤재욱·김성태·함진규·안효대·김학용·박덕흠·이만우·이인제·서상기·김정록 의원 발의) ..... 8
13.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강창일·김경협·김성곤·김승남·김재윤·박남춘·박수현·박지원·배기운·부좌현·윤호중·은수미·이상직·이해찬·장하나·정성호·정호준·최원식·한명숙·홍영표·이만우·이한성·한정애 의원 발의) ..... 8
14.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강동원·김관영·김성곤·박기춘·박주선·신장용·이석현·전정희·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 8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창식·김을동·주영순·김정록·박성호·이상일·정문헌·홍영표·문대성·김한표·윤명희·정수성·강석훈 의원 발의) ..... 8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재윤·배재정·신장용·양승조·우원식·윤관석·윤호중·은수미·이용섭·이원욱·장하나·정호준·조정식·진성준·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 8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문병호·김영주·윤관석·박남춘·은수미·한명숙·우원식·강창일·심상정 의원 발의) ..... 8
19.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이만우·문정림·조명철·박인숙·강동원·이한성·홍영표·박창식·유승우·김기선 의원 발의) ..... 8
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전하진·김성태 의원 발의) ..... 8
2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광진·김우남·박남춘·배재정·우원식·윤관석·이석현·이용섭·이원욱·장하나·정호준·조정식·진성준·최동익·홍영표 의원 발의) ..... 8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김성태 의원 발의) ..... 8
23. 환경책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부좌현·신기남·심상정·은수미·장하나·조정식·최민희·한명숙·김경협·홍영표 의원 발의) ..... 8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기식·김춘진·박지원·오영식·윤관석·인재근·장하나·정

진후·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	29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김진표·신장용·조정식·임내현·김태년·백재현·윤후덕·이찬열·노영민·이용섭·정갑윤·노웅래·이만우·주호영·유승희 의원 발의) .....	29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이춘석·이찬열·김경협·정호준·윤후덕·김기준·김우남·이상직·전순옥·윤관석·박민수 의원 발의) .....	29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춘진·배재정·심상정·임수경·장하나·전순옥·한명숙·최동익·홍영표 의원 발의) .....	29
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장하나·박민수·원혜영·홍익표·임내현·김민기·우윤근·심재권·이상민 의원 발의) .....	29
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권성동·김상민·김기선·김용태·김무성·이종훈 의원 발의) .....	29
3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	30
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김민기·장하나·배기운·박홍근·백재현·이학영·진성준·안규백·이완영 의원 발의) .....	30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영록·조정식·김상희·이찬열·장하나·강기정·홍문표·배기운·김춘진 의원 발의) .....	30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성곤·한정애·김우남·김선동·우윤근·이종걸·박민수·황주홍·김영록 의원 발의) .....	30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만우·정우택·조명철·김무성·윤관석·조현룡·김세연·강기운·정희수 의원 발의) .....	30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배기운·김기준·박홍근·안규백·김성곤·홍의락·김현미·박남춘·정청래·김상민·박민수 의원 발의) .....	30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낙연·배기운·김윤덕·정청래·이춘석·전순옥·심재권·이재오·황주홍·서영교·김재윤·김우남·변재일·민병두·김경협·조경태·박남춘·장하나·은수미·전정희 의원 발의) .....	30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서영교·박남춘·전순옥·전정희·이낙연·김미희·윤관석·배기운·안철수 의원 발의) .....	30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황주홍·김영록·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	30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상희·김재윤·도종환·배재정·심상정·윤관석·은수미·인재근·임수경·장하나·전순옥·최민희·최원식·추미애·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	30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윤명희·한명숙·이낙연·조정식·김춘진·김종태·김영록·장하나·부좌현 의원 발의) .....	30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박민수·최민희·백재현·진성준·유성엽·임내현·김광진·배재정·이상민 의원 발의) .....	30
4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윤관석·김경협·장하나·정진후·최민희·한명숙·인재근·오영식·김춘진·박지원 의원 발의) .....	30
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박홍근·배기운·노웅래·이원욱·이학영·전순옥·정호준·이석현·이춘석 의원 발의) .....	30
45. 기업살인처벌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영록·박민수·오병윤·김	

- 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승남 의원 발의) ..... 30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최규성·주승용·안민석·김우남·김춘진·김영록·윤후덕·김광진·강기정·이종걸·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879) ..... 30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우남·강기정·심재권·조정식·김광진·최동익·최규성·주승용·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4) ..... 30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김상민·김우남·김종태·김재원·김영록·이종훈·신경립·송영근 의원 발의) ..... 30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 30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우원식·박수현·홍종학·이원욱·배재정·장하나·문병호·윤후덕·최원식·박민수·배기운·전순옥·남인순·인재근·정청래·박홍근·김광진·박남춘·김재운·이학영·홍영표 의원 발의) ..... 30
51.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김태년·김경협·김동철·김성주·남인순·김선동·이학영·김광진·최동익·윤관석·진성준·이완영·전순옥·박남춘·김성곤·정진후·김상희·장하나·김재운·이상직·한정애·오영식·이이재·최규성·배기운·이종걸·김춘진·윤후덕·김상민 의원 발의) ..... 31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기식·김춘진·박지원·오영식·윤관석·인재근·장하나·정진후·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 31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황주홍·김영록·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 31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이춘석·이찬열·김경협·정호준·윤후덕·김기준·김우남·이상직·전순옥·윤관석·박민수 의원 발의) ..... 31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오병윤·윤후덕·윤관석·김미희·김선동·이상규·박남춘·전정희·김재연·한정애·이석기 의원 발의) ..... 31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김미희·남인순·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김성주·최민희·이목희·이석기 의원 발의) ..... 31
5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윤관석·배기운·김성곤·이학영·주승용·전순옥·민홍철·이상직·이상민·유성엽 의원 발의) ..... 31
5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만우·정문헌·박대동·강기운·김태원·심학봉·유승우·최봉홍·홍지만 의원 발의) ..... 31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배기운·박남춘·전순옥·안규백·김성곤·강동원·진성준·민병두·이낙연 의원 발의) ..... 31
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김민기·서영교·최민희·박민수·백재현·진성준·유성엽·임내현·김광진 의원 발의) ..... 31
6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춘진·박지원·오영식·윤관석·인재근·장하나·정진후·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 31
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원식·은수미·진성준·김용익·김진표·원혜영·한정애·추미애·배기운·이찬열·장하나·최민희·한명숙·진선미·임수경·전순옥·김재운·박남춘·안규백·남인순 의원 발의) ..... 31
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배기운·김윤덕·정청래·서영교·배재정·변재일·김경협·박남춘·전정희 의원 발의) ..... 31
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39
65.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9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환경노동위원회를 합니다. 어제는 노동부를 상대로 했고 오늘은 환경부를 상대로 합니다.

사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상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으로 인해서 2월 24일로 늦추게 되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법안 상정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듣고 나머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AI 확산 방지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과학적이고 증거 있는 원인을 아직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환경부의 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환경부 소관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까지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과 대체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AI 관련)

가. 환경부

(10시13분)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입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국감 이후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광희 자연보전국장입니다.

홍정기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최홍진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이민호 대변인입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장으로 재임용된 유승직 센터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김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금 현재 경기도 남양주 소재 빙그레사의 암모니아 가스누출사고 현장을 지금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추진 상황,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 사육농가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유형은 H5N8형입니다. 그 후 23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18건이 H5N8형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고창 농가 인근 동림저수지, 금강호 등 8개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를 수거해서 확인한 결과 총 211건이 검사가 완료됐는데 그중 20건에서 H5N8형 AI가 확인이 됐습니다. 31건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주 조사 대상은 발생 경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최초 발생 인근 동림저수지 또 금강하구 등의 철새가 H5N8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발생 농가 등에서는 아직 H5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내 가금농장에서 H5N8형이 발생된 것보다는 최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체는 일단 그 항원에 감염된 후 그것을 이겨낸 생체들에서 형성되는 항생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철새에 대해서는 GPS라고 해서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부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3종 8개체를 했고, 지난 간밤에 또 3개체를 추가적으로 포획해서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3종 11개체를 추가적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전남·북, 경남, 강원, 경북의 수렵장 운영을 중단시켜서 야생조류 서식지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 주요 이동 예상경로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폐사체의 친환경 매몰처리 요령을 시달을 했고 또 현지점검을 하는 등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GPS를 금년에 현재 11개를 부착을 했는데 40개까지 추가적으로 더 부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AI를 사전에 예찰해 내기 위해서 포획검사하는 마리 수를 작년에는 1000마리 했는데 금년에는 2000마리로 2배 늘릴 예정으로 있고 또 분변검사도 작년에 1만 점을 했는데 금년에는 2만 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도정비 측면에서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새 이동경로 파악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한편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이동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코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 몽골 등 철새 이동경로에 있는 국가들과 철새들이 국내에 유입하기 이전에 사전에 공동조사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대응, AI 전파기전 등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병 진단, 연구·역학조사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AI를 검사할 수 있는 생물안전실험실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AI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고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BL3(Biosafety Level 3)인데 그러한 규정에 맞는 실험실을 건립할 예정으로

로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는 한편 철새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거점별로 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환경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환경부장관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질의 시간을 5분에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법안상정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계륜 법안상정까지 같이 하고 하는 거로 할까요?

아예 법안상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안상정까지 같이 하고 질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신계륜 법안상정 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23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영록·김경협·백재현·김춘진·신기남·김승남·이춘석·이낙연·김윤덕·강기정 의원 발의)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김정록·김상민·이만우·이종훈·김동완·권은희·강은희·박인숙·홍지만 의원 발의)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재윤·배재정·신장용·양승조·우원식·윤관석·윤호중·은수미·이용섭·이원욱·장하나·정호준·조정식·진성준·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김을동·李宰榮·정희수·문정립·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영록·이낙연·최규성·배기운·강동원·이노근·김춘진·유승우·김광진·조정식·장하나·우윤근 의원 발의)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전하진·김성태 의원 발의)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미경·우원식·백재현·장하나·김경협·은수미·박남춘·한명숙·최봉홍 의원 발의)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낙연·변재일·김춘진·김진표·김영록·김광진·정청래·배기운·이상직·강창일 의원 발의)
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재윤·김한표·김종훈·이현재·박창식·황진하·김희정·박인숙·조명철·이철우·이노근·길정우·정우택·정갑윤·김성찬·손인춘·송영근·이한성·이에리사·李宰榮·신동우·조원진·윤재욱·김성태·함진규·안효대·김학용·박덕흠·이만우·이인제·서상기·김정록 의원 발의)
13.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강창일·김경협·김성곤·김승남·김재윤·박남춘·박수현·박지원·배기운·부좌현·윤호중·은수미·이상직·이해찬·장하나·정성호·정호준·최원식·한명숙·홍영표·이만우·이한성·한정애 의원 발의)
14.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강동원·김관영·김성곤·박기준·박주선·신장용·이석현·전정희·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최봉홍·박창식·김을동·주영순·김정록·박성호·이상일·정문헌·홍영표·문대성·김한표·윤명희·정수성·강석훈 의원 발의)
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재윤·배재정·신장용·양승조·우원식·윤관석·윤호중·은수미·이용섭·이원욱·장하나·정호준·조정식·진성준·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문병호·김영주·윤관석·박남춘·은수미·한명숙·우원식·강창일·심상정 의원 발의)
19.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이만우·문정립·조명철·박인숙·강동원·이한성·홍영표·박창식·유승우·김기선 의원 발의)
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전하진·김성태 의원 발의)
2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광진·김우남·박남춘·배재정·우원식·윤관석·이석현·이용섭·이원욱·장하나·정호준·조정식·진성준·최동익·홍영표 의원 발의)
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윤명희·김기선·서용교·나성린·주영순·박대동·남경필·민현주·김성태 의원 발의)
23. 환경책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관영·부좌현·신기남·심상정·은수미·장하나·조정식·최민희·한명숙·김경협·홍영표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환경책임법안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7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3개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위해를 줄이기 위해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등 도료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서 오염사고 시 유해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낙동강수계에 선도입되었던 완충저류시설을 한강, 금강, 영산강 등 전 수계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시험·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행정조치를 하는 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1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3항까지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2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비를 비료법에서 정하는 비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퇴비를 ‘처리분뇨’라는 개념으로 새로이 정의하려는 것으로 ‘퇴비’라는 용어가 일반국민과 현행 법령에 널리 통용되고 있고 축산농가 등에서 비료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퇴비의 정의가 비료관리법과 중복 또는 상호 모순이 되고 있으므로 퇴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나 업무의 이관 및 하위법령 정비 등 법 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한명숙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환수하려는 것으로 동 권한이 이양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행초기라는 점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제출안은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나 이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비용은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

를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변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주변지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수계에 설치한 완충저류시설을 4대강 수계를 포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 간에 철저한 분담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의무 등의 근거규정을 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에서 ‘누적 초과’로 변경하여 악취단속제도의 악용을 막고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악취배출부과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악취 배출량 산정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관련사업자 단체의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추가적으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 풍력발전 설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이나 ‘추가적인 자연훼손의 유발’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병헌 의원과 이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과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은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순환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을 자원으로 인식하며 자원을 최대한 순환이용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및 산업 관계자 간의 이견 조정과 제도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빈용기보증금협회 설립과 표준용기 도입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나 보증금의 원활한 환불방안 등 마련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되었던 일부 토양 관련 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 환수하려는 것으로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나 동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행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 위해성 차단을 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사전평가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질개선의 대상지역을 ‘상수원’에서 ‘한강수계’로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 범위를 상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수계 전체의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수계위원회의 구성 지자체 중 다수의 지자체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사고에 한정하여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환경오염피해 유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환경책임법안과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체계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근본적으로 배제하여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내용이 2011년 제 18대 국회 환노위에서 반영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수정의결되어 삭제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 관련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관련부처 간 이견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안은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환경오염피해의 범위에 자연환경 훼손을 포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대책으로 보험이 아닌 부담금을 징수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방법도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계륜 예.

○심상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신계륜 예.

○심상정 위원 지금 사람도 별로 없는데……

○위원장 신계륜 다 오십니다.

○심상정 위원 다 옵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나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김경협 위원입니다.

AI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 AI 원인조류를 처음에,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에는 가창오리를 지목을 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추정을 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추정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가창오리 이동과 분포현황을 모니터링을 해 왔는데 이 가창오리가 원인조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밀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확인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가창오리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의 서식지는 어디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개 시베리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 직전 서식지에서 AI가 발병을 했다 이런 정황은 있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거기는 우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베리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처럼 좁은 지역에 가창오리가 몰려있지 않고 예를 들면 1km<sup>2</sup>에 한두 마리씩 있을 정도로 그렇게 퍼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발생하더라도 집단폐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경협 위원 실제로 그쪽에서 AI 발병 정황이나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다면 이전 서식지에서는 그런 정황이 없고 그러면 날아오는 동안에 공중에서 감염이 됐거나 발병을 했거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도 정밀역학조사에

의해서 규명이 되겠지요.

○**김경협 위원** 원인에 대한 분석이 신속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대책도 세우고 예방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1월 17일에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을 했는데 그전에 이미 작년 10월 16일에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으로 전이 가능성이 있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경협 위원** 그리고 10월 16일 그러니까 H5형 바이러스 검출 당시에 환경과학원이 유관부처에 검출 결과를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에 통보한 거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11월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때 통보를 받고 농림식품부나 관계부처에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쪽에서도 조치를 안 한 게 아니고 분변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계속 그러면 이게 1월까지…… 이게 기간이 상당 정도로 지나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분석만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분석해서 최초로 확인된 게 1월 17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예방 차원에서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만경강 일대에서 저병원성 H5·H7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니까 실제로 농림식품부에서 검출지역 반경 10km 특별점검구간 정하고요, 임상예찰, 차단막 설치, 주변 소독 이런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10월 16일에 이게 검출이 되어서 통보를 했는데 전혀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고 이미 다 예측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7일에 발병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관님 얘기대로 그때까지 원인 분석만 하고 있었다, 역학조사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문제지

요. 이미 거기에 대한 조사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이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그때까지, 10월 16일 1월 17일…… 며칠입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3개월 동안 실질적인 대책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AI 이번에 이 사태를 불러온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농식품부, 다른 부처의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농식품부에서 분변시료를, 철새 분변시료를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성으로 나온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아마 시점 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이 AI H5형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통상 21일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은 잠복기간을 70일에서 8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리 되면 오히려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할 수도……

○**김경협 위원** 그래서 결국은 작년 10월 16일에 이 징후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조치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결국 3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1월 17일에 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조치들도 이미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다 확산이 되어서 벌써 다 퍼져 나간 다음에 뒤따라가면서 차단막 설치하고 소독하고 있어요. 보면 참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잠복기,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미리 미리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 과학원에서 조사한 부분은 저병원성들이 검출되어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준 것인데요, 그래서 저병원성으로 알려줘서 농식품부에서 분변을 조사해 보니까 고병원성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런 예찰 활동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 볼 때는 농식품부가 태만히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런데 장관님, 이게 정부부처가 여러 유관부처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철새는 환경부 소관이 되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철새는 주무부처가 저희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리고 가금농가는 농림축산부가 되고, 그래서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AI대책 규명에 소홀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부처별로는 어떻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발생이 되면 경계단계로 들어갑니다. 4단계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합동상황반에서 같이 근무하고요, 또 물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 상황반을 운영합니다만 저희 요원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고병원성이 발생되면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각자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AI뿐만이 아니고 철새의 생태를 관리하고 또 철새가 우리나라에 잘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해 주는 것도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고유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의 임무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부처로, 그런 것까지 전부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통합하지는 않지만 부처 간의 협력이라든가 기타 자료의 공유, 교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역학조사가 정확한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하니 혹시 정부부처 간에 업무가 충분히 교류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교류가 되는데, 바이러스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미시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어디 흔적을 남겨놓고 다니면 그게 금방 찾아지는데 그게 남겨놓고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에는 새누리당 경북 고

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 후에 종합적으로, 시간 끝나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네 차례가 있었는데 철새가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농림부하고 환경부의 예찰 대상 도래지가, 철새도래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환경부는 22곳 농식품부는 37곳, 이렇게 났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장관님 기억 나시겠습니까마는, 지금 방금도 철새 생태 연구, 환경부는 더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철새 연구가 환경부에서 몇 군데입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볼 좀 꺼 줘 보세요. 자료가 작는데.

미국에는 100만 마리 정도 포획해서 가락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만 해도 1060개소에 연간 20만 마리, 중국은 550여 개소에 20만 마리, 지금 한국은 국립생물자원관 한 5000마리,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00마리, 그다음에 유일하게 국립공원 안에 철새연구센터, 제가 작년에 직접 가보고 왔었습니다.

한 군데만 있어서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야만 철새 이동경로, 질병예방 또 철새 전문 연구가 가능하데 이게 지금 한국은 형편없다, 이것을 빨리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문을 드리구요.

오늘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대체토론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계륜** 예, 편하게……

○**이완영 위원** 제가 오늘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한우단체 등 축산 관련 단체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를 비료관리법으로 적용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농축산민들에 오히려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매우 크다, 지금 FTA,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특히 생산한 퇴비를 ‘처리분뇨’라는 새로운 정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마치 환경오염물질인 것처럼,

우리가 퇴비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거부감만 조장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법안에 보면 ‘생산자단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하는데 이것은 농업종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법 개정하느라고, 지금 매우 퇴비업자들만 유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농축산민이 아닌 가공업자들입니다. 이런 분들만 유리하게 해서 지금 매우 격분하고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환경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심지어 이 법 발의자보고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농축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안으로 지금 생산자, EPR요. 공제조합에 대해서 복수로 해야 된다, 지난번 법 개정 이후에 복수의 통합 공제조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오늘 답변을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면자료로 드릴 겁니다. 서면자료를 주시면 장관님이 직접 충분히 보시고, 이게 왜 지금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하나의 슈퍼공제조합만이 운영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 그리고 또 환경부 공무원들의 퇴직 자리로만 이용하고 있다라는 지적, 이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더 EPR제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합이 운영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독점적인 공제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오늘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앞의 것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도래지 숫자가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식품부는 농경지, 다시 말하면 축산농가 이런 농가 쪽의 AI 전염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조금이라도 철새가 오면 그것은 조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철새도래지가 큰 경우에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들로 쪼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 온 데는 그것을 하나로 취급하고 아주 적은 마리 수 오는 부분은 일제조사에서는 하지만 평소에 예찰은 적게 오는

데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현재 AI가 왔을 때는 주요 지역은 서로 역할 분담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렇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의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철새와 관련해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40개를 부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철새, 예를 들면 가창오리 같은 것은 몸무게가 한 300~4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착하는 GPS가 무게가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생존능력이 떨어지고 멀리 날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자기 체중의 5% 이내로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중적으로 붙인 게 위성방식으로 해 가지고 무게는 한 9g 정도 되는 것,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가격이 하나에 1000만 원씩 갑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처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지 한 번 끼워서 그 전지 수명 될 때까지 하는 것은 불과 6개월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떠날 때 가는 경로를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길면 그쪽에 도착한 지점은 볼 수가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성방식은 태양전지가 붙어 있지만 9g짜리로 아주 작아서 굉장히 고가인데 그것은 잘 충전이 되면 2년 내지 3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부착한 그 새가 자연사하거나 또는 어디에 잡아먹혀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러면 그 안에도 작동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가이지만 위성방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완영 위원** 철새연구센터를 증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린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철새연구센터를 저희가 연평도인가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지역별로 분소를 설치를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금년에도 예정되어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공사할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추가로 자료로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또 가축분뇨법과 관련해서 처리분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농가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퇴비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고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퇴비가 됐든 저희 정부안에 있는 시설퇴비가 됐든, 그런 용어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아마 이게 현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AI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오늘 업무보고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는 언제, 그러니까 정밀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 어쨌든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상희 충남대 독감바이러스연구소장께서는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내에 상존하는 저병원성 AI의 변이 가능성, 돌연변이 가능성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앞에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밀 역학조사는 어디 경로를 특정해 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또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철새만 한정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아직 정밀 역학조사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그러면 좀 분명히는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AI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된 게 철새 탓이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당시에 원발표문에는, 농식품부 발표문에는 그게 없었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철새로 추정이 된다고 답변하면서 아마 그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버리면, 모든 것을 철새 탓으로 해 버리면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면피용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아까 김정협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고병원성 AI 항원과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저병원성 AI는 작년에 비해 50.5% 증가했다고 그렇게 결과를 발표한 지 3시간 50분 만에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런 발표의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환경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실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런 애꿎은 농민하고 그다음에 살처분당하는 332만 마리 닭·오리 그리고 심지어는 철새들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전가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두 부처 간에, 아까는 서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나 실제로 제가 보기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두 부처 간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긴밀한 협력이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찰한 결과를 전달해 주는 것은 기능적으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헬기 소독한다고 할 때 그 소독하는 소독제가 어떤 것이냐, 그 샘플을 보내 달라고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다 우리한테 보내 줘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그중에 유독물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유독물이 들어 있는 이러이런 소독제는 쓰지 말아라 하니까 농식품부에서 그건 전부 또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서로 필요한 부분은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중요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AI나 구제역 등 야생동물 질병의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을 위해서는 유전자 조사가 필요한데, 환경부가 지금 국립야생동물질병연구원 건립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은수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재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것도 환노위 위원들께서 서로 협력을 해서, 늦었지만 시급히 통과를 시켜서 어쨌든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안심하고 살처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환경부나 환노위 모두 협력을 할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변을 수거하거나 사체를 수거했을 때 저희가 검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충북대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시설이 들어서면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H 계열은 바로 기계에 의한 분석인데 N 계열은 계란에다 접종을 해 가지고 계란이 사는지 죽는지를 봐서 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것까지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서용교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질의에 앞서 가지고 현안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피해농민들이 참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설 연휴도 있고 열심히 방제작업이나 뒤, 사후 수습을 하느라고 다들 고생을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과로로 살처분 작업을 하던 분이 돌아가시고 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호주, 철새 협약을 맺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용교 위원** 일본하고는 지금 안 맺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속히 좀 맺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94년도부터 맺었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가 해외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 협약을 맺었으면 그 이전부터 각 사례들이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철새에 의한 AI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러시아와 관련해서, 과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작년 겨울에 오기 시작한 건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농림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매몰지 관리라든지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조사하는 거라든지 환경과학연구원에서 분변이나 혈액 채취해서 조사하는 그런 정도인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농림부하고의 유관기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 매몰지에 관련해서는 1월 달에 서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초기에? 2월 달 돼서 이게 서로 자료 공유가 되고 대책을 같이 세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 않고요, 확진되거나 또 H5 계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바로 예방 살처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이 매몰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상황실만 둘러보고 매몰지 현장까지는 환경부 공무원이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현장까지 다 다녀왔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로부터 AI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또는 이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환경부에서는 전문성 있는 단체들 또는 시민단체들로 각종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자문관 이런 것들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조사를 안 하고…… 사람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서 종합해 가지고 정밀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용교 위원** 통상 결국은 과학적인 역학조사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AI가 발생된 것 중에 철새에 의한 것이 외국에서도 희귀한 사례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평상시에 환경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철새에 의한, 철새가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지금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철새도래지를 예찰하는 데도 매일 30여 명 이상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료 채취한 것을 수집해서 농식품부에 넘겨주고 또 충북대학교에 의뢰하고 이런 작업들에 이쪽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다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수습이 돼야만 다른 부분에 좀 투입할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제작업의 방식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용하고 있는 소독약도 우리 환경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분은 토양 속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익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성분만 보고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약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약 형태가 액상이든 또는 정제된 형태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다 사용됐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어떤 유해성 평가들을 좀 꼼꼼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300여 만 마리가 넘기 때문에 매몰지 관리 부분들이 지금 일부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부 FRP 통에다가 해서 매몰하든지 아니면 밑에 합성수지를 깔고 고온열처리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FRP 통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RP 통도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를 볼

륨의 70%만 쓰고 30%는 좀 비워 놔라, 그래서 가스가 생긴다든지 물이 생겼을 때 넘치지 않도록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용교 위원** 70% 넘게 넣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심상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밀 역학조사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지금…… 날짜를 저쪽에서 한정하기가 어려운……

○**심상정 위원** 저쪽이라 하면 어디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밀 역학조사 팀에서 언제까지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상정 위원** 지금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벌써 발생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아직 그 원인 규명조차도 명확하게 되지 않는 건 문제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밀 역학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AI 발생 원인을 철새다, 이렇게 한 것은 전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철새다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상정 위원** 철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1월 28일 날?

○**환경부장관 윤성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같은 국제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창오리가 지금 AI 발생되기 3개월 전에 왔잖아요.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잠복기간이 한 20여 일 된다는데 만약에 이 가창오리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감염이 돼 있다 하면 지금 오리농장에서 발병한 1월 17일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견 상식적인 얘기……

그다음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같은 경우에는

‘고병원성 AI는 야생조류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야생조류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AI를 전파할 가능성도 역시 희박하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새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생동물 보호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 위상이 초라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모든 가능성을 다 정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창에서 최초 신고가 되고 확진이 됐는데 그 인근 한 5km 안 되는 지점에서 가창오리가 많이 죽은 폐사체들이 발견됐습니다. 또 거기서 H5N8……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가창오리가 우리나라에 온 게 한 3개월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2007년부터 13년까지 조루인플루엔자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니까? 연구 결과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보유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저병원성인 H5가 고병원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환경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환경조건은 한국에서 생긴 게 아니냐 이거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저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제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제기하는 바로 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가 역학조사위원회에 참석하셨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그런 쪽에 아직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환경부가 고병원성 AI 대책 상황반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역학조사 보고서도 갖고 있지 않은 환경부가 뭘 어떤 상황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중앙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에 보면. 그런데 관계자 참여 조사도 공동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틀 전에 논의한 게 전부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부가 전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철새가 AI의 주범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도 나오는데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축산부의 판단대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발표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책임 있게 뒷감당이 되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점을 환경부장관께서 솔직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하시고 그 대책을 국회에 지원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 무조건 농축산부하고 협조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BL3 수준의 실험시설을 지금 건립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철새센터 등, 또 안전연구원 이런 자체적인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모든 철새 또는 AI 이런 걸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좀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생물안전실험실을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실험실 크기가 너무 작아요. 전염병 하나만 실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인데, 전문인력은 5명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도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적어도 실험실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문인력도 2배 이상으로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우리 한노위에서 지원방안을 생각해 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체가 발생능  
가에서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발생 가  
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밀 역학조사에서  
그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발생 또는 철새에서 온 것, 다양한  
경로를 다 상정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역학조사위원회 첫 회의에는 우리 국립환경과학  
원 관계자가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정밀 역학조사는 정밀한 조사  
이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예  
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의 주영순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수 GS칼텍스 현장에서 발생한  
유류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여수 어민들과 시민들께서는 유  
류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또 생업  
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도 생태계  
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주민들의 피해도 클  
것 같습니다. 환노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가지 못했습  
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다녀오셨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朱永順 委員 해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환경과  
직접적인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부는 큰 틀  
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  
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들 환경공단이라  
든지 과학원 또 영산강청, 전부 거기 동원돼서  
같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朱永順 委員 최소한 환경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야 합니다.

2007년도 태안 유류피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때는 환경부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  
향조사를 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주민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후속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결과는 지자체에 통보  
를 해 가지고 그분들 진료를 받게 한다든지, 이  
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  
정입니다.

○朱永順 委員 국비 지원도 좀 일부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일부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건강영향조사뿐만 아니라 환경부  
차원에서 여수사고에 대하여 생태계나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떤 것이 있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피  
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 주관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런 재  
원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  
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해수부가  
저희들한테 요청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지금 하  
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수부와 지자  
체에 통보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  
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朱永順 委員 장관님께서도 시간 나시면 현장  
을 한번 답사해 주시고, 유류피해는 결국 그 지  
역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피해  
를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고.

보상 문제도 지금 주민들께서는 선보상을 요구  
하고 있는데,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기 때  
문에 이런 부분도 협업을 통해서 각 부처하고 협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지역  
별로 대책위원회, 그런 주민 조직이 생기고 있습  
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하는 내  
용을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원인자하고 또 국제해사기구 이런 쪽에 보상 내  
지 배상 이런 것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피해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아마 바로 할 겁니다.

○**朱永順 委員** 환경부에서 지난 29일에 발표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를 보면 동립저수지는 조사 지역 중 겨울철새 개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朱永順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예찰 지역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철새 오기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가창오리가 현재는 동립저수지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철새 생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립저수지는 그 당시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면 장관님 생각에 ‘예찰’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찰’은 미리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찰이 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환경부가 야생조류 관리 감독의 주무부처로서 야생조류의 개체수가 많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예찰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동경로나 감염 매체 등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계륜**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네 번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네 번 발생할 때마다 역학조사를 했습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역학조사라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철새가 원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부 네 번 다 혈청형이 H5N1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형인데 그 원인이 명료하게 규명됐는지는 확인을.....

○**한명숙 위원** 여태까지 네 번 발생한 이후에 역학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이 나왔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명료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항상 불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역학조사도 확실하게 철새다, 확실하게 집단적으로 키운 그런 환경 조건이다,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부터 추정을 해서 환경부마저도 농림부의 발표에 좀 의존해서 철새유입설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환경부가 그것을 조치하는데 철새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해야 된단든지, 이렇게 우왕좌왕 했다는 거지요, 지금은 조건부로 하고 있지만.

철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또 2차, 3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먹이 주는 것은 일정 요건에 따라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H5N8 등 고병원성이 발생한 지역은 아무나 주지 못하도록,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먹이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철새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를 가상해 본다든지 또는 ‘철새가 원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를 가상을 해 보면, 만약 철새가 원인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집단사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만 닭들, 오리들이 숨을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상당히 예산만 들였지 헛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의 주무책임은 아니지만 실제로 철새가 원인이라는 데 너무 방점을 찍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단사육 환경에 대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런 질병통제 활동을 벌여

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잠재적 확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잠재적 확산에 대한 예방효과, 이런 것들이 큼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연계되는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발생 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 전에도 역학조사에도 환경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가가 없지만 환경부가 TF 팀을 마련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할 때 환경적 이리이러한 요소를 넣어 달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아까 심상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UNDP나 FAO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이런 대책위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요인을 들면서 철새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환경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철새 먹이 주기를 금지했던 것은 철새 이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철새가 굶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주린 철새들이 먹이로 유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발생 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하고 더 확산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먹이 금지사항은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지고, 이 부분에 이동경로나 또는 오히려 먹이를 안 줌으로써 높은 치사율에 이를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면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발생 후 공동대응이 아니라 발생 전부터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예찰이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좋지만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환경부가 무게를 두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면, 먹이 금지 부분은 선불리 먹이 주러 들어갔다가 새들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더 면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사체를 수거해서 검사한 철새 여러 개체에서 H5N8형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비록 살아 있는 개체라 하더라도 보유할 수가 있어서 그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농경지에 먹잇감이 없으면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가능하면 안전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새의 원인을 전체로 방역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나중에 아닐 때 그게 전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우선은 이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경로를 다 차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꼭 철새가 원인이다 해서 그것만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과학원을 포함해서 환경부가 독자적인 역량을 좀 갖춰 나가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정밀역학조사팀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자체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지자체장이……

**○위원장 신계륜**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십시오.

**○한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자체장들이 지금 살처분 위주로 하는 방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당하고 그것을 지금 막아야 되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제효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환경부의 주무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방제 전에도 TF팀을 마련해 가지고 각 부처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부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살처분도 환경부는 침출수 때문에 환경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출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이것은 3년 뒤에는 농지로 변화시켜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썩지를 았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를 볼 때 살처분 문제, 나중에 AI가 결국 없어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봐서 방제 효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집니다. 아마 기온이 이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최봉홍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AI가 우리나라에 변진 지 오늘이 28일째입니다. 그렇지요? 매년 100일 넘었는데 금년에 28일째고 현재 322만 수를 살처분 완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종전에도 죽 그랬습니다만 처음 발생한 2003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방역한 농가 수가 2578가구, 살처분한 가금 수가 2500만 마리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드러나 가지고 확진이 된 것은 100마리밖에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처분을 할 때 그 농장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역학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축사의 진원이, 병원이 밝혀져야 살처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리를 따져 가지고 확실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살처분을 하고 이동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 하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 농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 목숨을 끊은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예찰을 한다 해 가지고 망원경 들고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기껏 마리 수만 센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몽골이나 시베리아 같은 데는 사육을 저렇게 안 합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하는 상태가 우리나라는 외국과 판이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방제를 해 가지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서 철새가 올라가고 그대로 끝이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기온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정부는 방제한다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압박만 가하고 국민들한테 공포 분위기만 만들고 지금 안 팔려서 난리이고 하는 이런 상황은 시대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변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가금들을 오히려 농수산식품부나 그런 데 얘기를 딱 해 가지고 환경을 바꾸어라,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 봐 가지고…… 우리 사람들 겨울에 감기 많이 안 걸립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은 AI 걸려 봐야 별 영향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냥 볼 때 좀 답답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리하고, 가창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와 가지고 겨울을 나는 곳이 중국하고 우리나라뿐이지요? 베트남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창오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95% 이상 오고요. 나머지 5%는……

○**최봉홍 위원** 기껏 내려가 봐야 일본이나……

○**환경부장관 윤성규** 일본하고 중국 주위……

○**최봉홍 위원** 대만 정도 약간 가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병 선형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도 없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저 옛날에 해 왔다 해 가지고 답습을 하시지 말고 진실하게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몰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데 보니까 호기성 호열균 미생물처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성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게 또 안정화되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이것으로 처리를 하면 상당한데 이것 좀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남양주 도농동 암모니아가스 사고 났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지금 암모니아가스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암모니아 쓰고 있는 냉동공장이 한 500군데쯤 되는데, 500군데 넘습니다. 이것은 아직 옛날 구식시설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화학사고가 이게 터지고 나면, 암모니아가스 갖다가 또 환경부에 떨어집니다. 새 이것은, 철재는 환경부 사항도 아닙니다만 환경부가 맡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장한테 화학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좀 해 가지고 내구연도 넘은 것—이것은 40년 된 공장입니다—바꾸라고 사전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봉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육 상태가 외국하고 달리 우리가 굉장히 밀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용하는 국토 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또 지금 철재가 오는 지역이 농경지가 많은 쪽으로 오는데 가축 사육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철재 오는 지역하고 AI 발생지역이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산시키는 것도 농림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중복하다 보니 덮어씌운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암모니아와 관련해서도 지난 4월인가 우리 한정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사업장 바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런 피해 또는 발생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다 하셨나요?

○**최봉홍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지난 1월 17일 날 AI가 확산되고 난 뒤에 환경부도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대뉴얼에 따라서 상황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정에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일에서 20일까지는 환경부의 생물다양성과 직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야생조류 AI대응 TF상황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1일 이후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에 위원** 그런데 당시 상황반장이었던 자연보전국장이 1월 30일……

○**환경부장관 윤성규** 2월 3일 날……

○**한정에 위원** 그런데 설 이전부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황반장 업무를 하지 않으셨고요. 실지로는 2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공석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오셨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공백은 없었고요. 2월……

○**한정에 위원** 환경부 이민호 과장이 2월 4일~11일 동안 상황반장으로 임시 파견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과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이민호 국장이……

○**한정에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어 있던 분이 갑자기 와 가지고 상황반장을 하시다가 11일 날……

○**환경부장관 윤성규** 파견된 상태는 아니고요. 교육이 끝나고 와서 대기 상태였습니다.

○**한정에 위원** 끝나고 대기 상태에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으로 지금 업무가 바뀌었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에 위원** 그리고 2월 11일자로 남광희 전 기후대기정책관이 자연보전국장으로 오셔서 TF반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에 위원** 그런데 2월 11일 날 발령받았는데 이 분은 2월 11일 그 당시에 해외 출장 중이셨어요, 2월 10일부터. 2월 13일 날 귀국하셨는데

당시 본인이 맡고 있었던 기후대기 업무 때문에 중국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환경부는 상황반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환경부장관 윤성규** 상황반장이……

○**한정애 위원** 상황반장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는 않고요. 과장이 3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또 국장과 장관한테……

○**한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AI가 발생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가나 그다음에 이 원인이 무엇이나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대처를 한 것을 보면 단지 이 상황반장, TF 팀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AI가 확산되어서 살처분 중이었던 경남 지역하고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장기간 공석,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청장도 공석 중인 상황.

도대체 왜 박근혜정부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당장 TF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해당 정당의 전문위원으로 데려…… 그것이 그렇게 바뀐 것인가, 이 업무 정도는 정리를 해 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청창들의 퇴직이, 이미 정년이 되어서 퇴직이 예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빠른 인사조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살처분이 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 관할하는 지역 사령관이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는 않고요. 정년이어서……

○**한정애 위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대행을 할 수 있고 한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내일모레 정년이고 자리를 그만두고 나간다 또는 내가 옮겨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그 업무가 손에 잡힙니까? 이것 업무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까? 짐 챙기기가 바쁘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년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정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대응과 관련되어서 환경부는 현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계시지 못했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철새관심지역 이게 지금…… 이미 과거에도 누누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셨지만 네 차례나 AI가 발생을 했는데, 이미 네 차례가 발생한 AI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지도 못하고 부처 간에도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철새가 문제가 되니까 철새도래지를 기본적으로 AI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정보로 삼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예찰 대상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곳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집중관리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곳하고 이것이 다릅니다. 환경부는 관리하는 철새도래지역이 10개 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36개 지역, 좋습니다. 이 10개 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36개 지역에 같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부처가 공히 일치하는 지역은 4개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두 부처가 관리하지 않은 5개 지역에서 AI가 발생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AI가 발생했고 철새로 인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하면 최소한 부처 간에 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일원화, 책임지역을 지정, 뭐 이 정도……

대통령께서는 말로는 부처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협업하게 하겠다 하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늘 어딘가 사각지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언제쯤 해소가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0개소는 아니고요, 환경부가 30개소입니다. 농식품부가 37개소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는 AI만 보고 철새를 관리하는데가 아닙니다. 철새의 생태관리를 해 줘야 할 주무부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안 잘 서식했다가 다시 번식지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철새도래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방제한다고 해서 헬리콥터 날려 가지고 철새도래지역의 철새들 다 전국에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 버리는 바람에, 실질 철새가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 철새들을 전국으로 다 끌고루 퍼트려 주시는 역할을 했지요. 그런 것들도 부처 간에 제대로 된 협업이 안 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헬리콥터 방제를 할 때도 철새가 그 당시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 지역은 피하도록 사전에 예방됐고 또 그 후에는 저희가……

○**한정애 위원** 철새의 생태를 아시지 않으니까, 장관님은? 밤에 활동을 하느냐, 낮에 활동을 하느냐?

○**환경부장관 윤성규** 조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정애 위원**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낮이건 밤이건 머물고 있는 철새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하기 좋은 시간에 가 가지고 다 흩어 버리면……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 원래 20만 마리씩, 30만 마리씩 있었는데 다 날려 버리고 지금 몇만 마리 안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나머지 몇십만 마리들 다 어디로 갔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그것 때문에 날아갔는지 아니면 거기의 먹이가 떨어져 가지고 보다 많은 쪽으로 옮겼는지 그것은 조사를 더 해 봐야 됩니다.

○**한정애 위원** 부처 간에 협업을 제대로 하시고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최소한 엇박자가 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까지 엇박자 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 내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래요? 됐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아까 지적한 정부부처 내의 원활할 정보 교류와 참여, 이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 이런 게 줄어들고 언론보도가 사라지면 그냥 사라졌다가 내년에 또 오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을 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라도 분명히 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처 간에 합동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전

해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앞서 AI 관련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한국이 지금 AI 발생 건수가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볼 때는 상위권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10년에 다섯 번째 생겼기 때문에.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이 발생 건수가 세계적으로 11위입니다. 그런데 다빈도 국가 목록을 잠깐 보시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네팔, 터키, 대충 보아도 우리나라보다 상시 기온이 높고 또 경제적으로도 저개발 국가라고 불리우는 이런 국가들 바로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순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결과만 보더라도 저희가 지난 AI, 몇 번 반복해서 터지는 동안 원인을 잘못 짚었다 그리고 해결책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새, 그러니까 외부 유입 요인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 비교해보자면 OECD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뭐가 다른지 보았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어떤 집단적인 공장제 방식의 축산 방식이 문제다라고 결론적으로, 정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농림부 주도로 이런 축산제도 개선을 촉구하기에는 아마 농가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무래도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농가들의 입장은?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환경부가 동물복지라든가 생명권 차원에서 그리고 동물이 건강해야 사실 그것들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도 보장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축산 가이드라인의 개선과 제정에 환경부가 되게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농식품부장관하고 적

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현재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가축위생 방역본부 여기서 철새 분변 수거 등등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은바 이 철새 분변 수거를 하면서 동시에 가금류 축산농가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철새에 원인을 들고 농가로부터 어떻게든 격리하고 방역한다는데 방역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두 군데를 다 취급하면서 넘나들면서 오히려 2차, 3차의 감염 요인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하시고 너무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 식의 방역과 살처분, 안에 있는 이런 부조리한 부분들도 시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살펴 보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주요 일간지에서 계속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공사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간주하고 여쭙는데요, 거기서 불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된 내용에는 ‘헬기를 여섯 군데 공사장에서 쓰기로 했는데 36개 송전탑 현장에서 쓰고 있다, 그 내용 때문에 우리 지역청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서를 보면 과태료 처분은 헬기 이용에만 되어 있지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면적이 7만 9862㎡인데 현재 5배 이상 사업장 면적이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안 했고 지적을 아예 안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여기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 건의 경우에 송전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km가 영향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면적이 변동되는 부분은 승인기

관의 장이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기관은 이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하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1분만 더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그렇다면 송전탑 좌우로 1km 최소 지역 범위 내에서만 5배의 면적 증가가 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우리 지방환경청이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역청에서 확인한 부분 다시 재확인할 것이고요.

그 대신 아까 저도 최소 지역 범위 부분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보았더니 확장된 면적 중에 농지면적이 2만 2000여 ㎡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만 ㎡만 넘어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환경부장관님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후에 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면적 중에 반드시 장관님과 협의해야 될 농지면적이 1만 ㎡면 협의해야 되는데 2만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선 양쪽으로 1km 범위의 최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협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행령가·나에 별도로 적혀 있는 요건입니다. ‘가’에서는 회피가 되지만 ‘나’에 따르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유권해석이랄지 환경부 입장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장관님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보는 분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입법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장하나 위원 지금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를 들면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위의 조문으로 자기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잘못됐다고 하는 조항이 명백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것을 기준으로 승인한 것이거든요. 적법한 겁니다, 이럴 때는.

○**장하나 위원**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환경부에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에 이러한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습시다. 동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라, 이 말은 농지가 1만 m<sup>2</sup> 이상일 때 확인하시라는 말이고요. 이게 당시 환경부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시행령이 미비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너무 한전과 산자부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봐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오히려 국책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법을 고친 다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있는 시행령을 미비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자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고요.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을 얼마나 큰 규모, 어떤 구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규모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40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것 가지고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완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도표까지 제시하면서 지적하던데요, 이번에 규모 있게 추진하시지요, 이번 기회에 아주 규모 있게.

이것하고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과 약간 다르면서도, 상이하면서도 유사점도 있는데 좀 규모

있게 해서 확실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보시지요, 키우고 사람도 늘리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리고 오전 마지막으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의 김성태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벌써 네 차례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번까지 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김성태 위원** 다섯 번째입니다, 맞아요.

이게 발생 원인이 주로 겨울철새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데, 장관님 근본적으로 이번 AI의 원인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나 농식품부나 아직은 추정 단계고 정확한 원인은 현재진행 중인 정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고병원성 AI도 역시 겨울철새에 의해서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잠정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성태 위원** 만약 철새가 AI 바이러스의 유입 원인이라면 철새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은 그동안 매년 연간 한 1만여 점의 분변을 채취해서 예방적으로 검사를 하는 한편 또 GPS라고 해서 추적기를 산새를 포획해 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GPS가 새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붙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붙이기는 하지만 그 사용 가능 기간은 짧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상시적인 질병 발생 여부 이런 예찰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질병 예찰 추진에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 아울러서 본 위원은 제도적 정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철새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이번 AI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철새 이동경로와 분포 변화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철새의 생태적인 특성상 다양한 새들, 그러니까 야생조류들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또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실시간 정확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철새의 이동경로 파악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장관님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PS 부착을 확대하는 한편 또 포획검사도 금년 중에는 1000마리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것은 러시아라든가 몽골, 중국 등 서식지, 번식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기 전에 현지에서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성태 위원** 그런 다각적인, 국제적인 공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특히 야생동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나 또 AI 이런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당장 오늘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야생생물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들이 야생질병 방지에 유효한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지 진단, 역학조사, 폐사체 신고 등 여러 가지 장치가 그 개정

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오전에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렸습니다, 5분밖에. 조금씩 여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대한 질의를 오전 중에 마치려고 하는데 정마치기 전에 꼭 하실 말씀이 더 계신 분은, 지금 장하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서용교 위원님 앉아 계십니까.

○**장하나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그러십시오.

○**장하나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장하나 위원** 현안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공청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계획을 제가 오늘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또 양당의 김성태 간사님 그리고 홍영표 간사님 그리고 다른 환노위 위원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이라는 제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법도 전혀 없고요. 동물원의 법상 지위도 공원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제대로 된 소관 부처도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벌어지는 동물학대와 또 이차적으로 사육사들이 이러한 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등의 끔찍한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법 제정의 시급성을 이제 많은 국민들과 또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들도 대한민국 국회의 환노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서를 어제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님께 전해 드렸고요. 또 많은 단체들도 어제 국회 정론관에 와서 그러한 촉구를 했는데 간사님들께서 새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번 회기 안에 꼭 반드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계신가요?

○**한명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신데 참는 것이지요, 지금?

○**이완영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서용교 위원님 혹시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서용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3항까지 22건의 의안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의한 의안 중 의사일정 제19항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23항 환경책임법안 그리고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과 제14항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 그리고 아까 장하나 위원이 말씀하신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간사님들께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완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신속히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서면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도 서면질의에 포함하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기식·김춘진·박지원·오영식·윤관석·인재근·장하나·정진후·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신장용·조정식·임내현·김태년·백재현·윤후덕·이찬열·노영민·이용섭·정갑윤·노용래·이만우·주호영·유승희 의원 발의)

**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이춘석·이찬열·김경협·정호준·윤후덕·김기준·김우남·이상직·전순옥·윤관석·박민수 의원 발의)

**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춘진·배재정·심상정·임수경·장하나·전순옥·한명숙·최동익·홍영표 의원 발의)

**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장하나·박민수·원혜영·홍익표·임내현·김민기·우윤근·심재권·이상민 의원 발의)

**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권성동·김상민·김기선·김용태·김무성·이종훈 의원 발의)

3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동완 · 김을동 · 李宰榮 · 정희수 · 문정림 · 강석호 · 조명철 · 이완구 · 이노근 의원 발의)
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민기 · 장하나 · 배기운 · 박홍근 · 백재현 · 이학영 · 진성준 · 안규백 · 이완영 의원 발의)
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김영록 · 조정식 · 김상희 · 이찬열 · 장하나 · 강기정 · 홍문표 · 배기운 · 김춘진 의원 발의)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성곤 · 한정애 · 김우남 · 김선동 · 우윤근 · 이종걸 · 박민수 · 황주홍 · 김영록 의원 발의)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 · 이만우 · 정우택 · 조명철 · 김무성 · 윤관석 · 조현룡 · 김세연 · 강기운 · 정희수 의원 발의)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배기운 · 김기준 · 박홍근 · 안규백 · 김성곤 · 홍의락 · 김현미 · 박남춘 · 정청래 · 김상민 · 박민수 의원 발의)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낙연 · 배기운 · 김윤덕 · 정청래 · 이춘석 · 전순옥 · 심재권 · 이재오 · 황주홍 · 서영교 · 김재운 · 김우남 · 변재일 · 민병두 · 김경협 · 조경태 · 박남춘 · 장하나 · 은수미 · 전정희 의원 발의)
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서영교 · 박남춘 · 전순옥 · 전정희 · 이낙연 · 김미희 · 윤관석 · 배기운 · 안철수 의원 발의)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황주홍 · 김영록 · 최규성 · 배기운 · 박민수 · 오병운 · 김재연 · 이상규 · 김미희 · 이석기 의원 발의)
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경협 · 김관영 · 김상희 · 김재운 · 도종환 · 배재정 · 심상정 · 윤관석 · 은수미 · 인재근 · 임수경 · 장하나 · 전순옥 · 최민희 · 최원식 · 추미애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윤명희 · 한명숙 · 이낙연 · 조정식 · 김춘진 · 김종태 · 김영록 · 장하나 · 부좌현 의원 발의)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박민수 · 최민희 · 백재현 · 진성준 · 유성엽 · 임내현 · 김광진 · 배재정 · 이상민 의원 발의)
4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윤관석 · 김경협 · 장하나 · 정진후 · 최민희 · 한명숙 · 인재근 · 오영식 · 김춘진 · 박지원 의원 발의)
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박홍근 · 배기운 · 노웅래 · 이원욱 · 이학영 · 전순옥 · 정호준 · 이석현 · 이춘석 의원 발의)
45. **기업살인처벌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최규성 · 배기운 · 김영록 · 박민수 · 오병운 · 김재연 · 이상규 · 김미희 · 이석기 · 김승남 의원 발의)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최규성 · 주승용 · 안민석 · 김우남 · 김춘진 · 김영록 · 윤후덕 · 김광진 · 강기정 · 이종걸 · 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879)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김우남 · 강기정 · 심재권 · 조정식 · 김광진 · 최동익 · 최규성 · 주승용 · 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304)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이만우 · 김상민 · 김우남 · 김종태 · 김재원 · 김영록 · 이종훈 · 신경림 · 송영근 의원 발의)
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동완 · 김을동 · 李宰榮 · 정희수 · 문정림 · 강석호 · 조명철 · 이완구 · 이노근 의원 발의)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수미 · 우원식 · 박수현 · 홍종학 · 이원욱 · 배재정 · 장

하나·문병호·윤후덕·최원식·박민수·배기운·전순옥·남인순·인재근·정청래·박홍근·김광진·박남춘·김재윤·이학영·홍영표 의원 발의)

**51.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김태년·김경협·김동철·김성주·남인순·김선동·이학영·김광진·최동익·윤관석·진성준·이완영·전순옥·박남춘·김성곤·정진후·김상희·장하나·김재윤·이상직·한정애·오영식·이이재·최규성·배기운·이종걸·김춘진·윤후덕·김상민 의원 발의)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기식·김춘진·박지원·오영식·윤관석·인재근·장하나·정진후·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황주홍·김영록·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최원식·이춘석·이찬열·김경협·정호준·윤후덕·김기준·김우남·이상직·전순옥·윤관석·박민수 의원 발의)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오병윤·윤후덕·윤관석·김미희·김선동·이상규·박남춘·전정희·김재연·한정애·이석기 의원 발의)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김미희·남인순·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김성주·최민희·이목희·이석기 의원 발의)

**5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윤관석·배기운·김성곤·이학영·주승용·전순옥·민홍철·이상직·이상민·유성엽 의원 발의)

**5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만우·정문헌·박대동·강기윤·김태원·심학봉·유승우·최봉홍·홍지만 의원 발의)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

**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배기운·박남춘·전순옥·안규백·김성곤·강동원·진성준·민병두·이낙연 의원 발의)

**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김민기·서영교·최민희·박민수·백재현·진성준·유성엽·임내현·김광진 의원 발의)

**6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춘진·박지원·오영식·윤관석·인재근·장하나·정진후·최민희·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원식·은수미·진성준·김용익·김진표·원혜영·한정애·추미애·배기운·이찬열·장하나·최민희·한명숙·진선미·임수경·전순옥·김재윤·박남춘·안규백·남인순 의원 발의)

**6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배기운·김윤덕·정청래·서영교·배재정·변재일·김경협·박남춘·전정희 의원 발의)

**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의사일정 제64항까지 4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6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 기준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시 소액환수금의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고치는 등 법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3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64항까지 4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64항까지 4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본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24항 한정에 의원안은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하나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문제와 이미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25항 김진표 의원안은 개인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와 개인 세무사 간 업무 범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무사의 보험사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직무영역을 둘러싼 전문직역 종사자 간의 갈등 문제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26항 정부안은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 시에 소액환수금의 징수를 면제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연체금 한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소액환수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연체금 한도를 삭

제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처럼 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에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8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중간 부분입니다.

28항 한정에 의원안은 고용보험기금 중 모성보호에 관한 지출의 40% 상당을 고보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부 사업에 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재정적인 여건과 납부자의 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과 30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30항 김성태 의원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전산망인 일모아시스템의 활용을 늘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정보 보호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40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가운데 제33항 김우남 의원안은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우선재고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우선재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벌칙 신설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제35항 박인숙 의원안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월 1회의 태아검진휴가를 유급으로 주려는 것으로, 모성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태아검진시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하단에 제40항 한정에 의원안은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나 기업의 인력 부담이 작용할 것이고 관련법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제도와의 중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의사일정 제43항과 44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43항 한정에 의원안은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

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하단에 의사일정 제46항~제48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48항 윤명희 의원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에 의사일정 제50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간접고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나 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51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경쟁입찰제도 등 타 법률상 우선구매제도와 중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2항과 53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52항 한정애 의원안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표할 때 수급인의 산업재해 현황을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고용 형태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할 필요성이 있으나 통계 작성의 현실적 어려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중간 부분입니다.

54항~5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54항 최원식 의원안은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보험 가입은 영세 사업장에게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의 제57항과 58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58항 박성호 의원안은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외국인 근로 사업장의 차별 실태를 지도 점

검토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기존 교육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력상 모든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의 제61항과 62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61항 한정애 의원안은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액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 시 10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체계와는 다르므로 도입에 있어 입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62항 김경협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임금이 아직 개념상으로는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견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의 제63항과 64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박민수 의원안과 정부안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지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질의시간을 포함해서 1차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저는 지금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이번 임시국회 및 법안소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기본권 같은 것들의 유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부가 거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평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국회가 나서서 해결했던 사안이 제가 작년에만 따져 봐도 1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대부분 노동부가 없거나 혹은 노동부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고용부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우선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노사정위조차도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히 빈껍데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 주요한 요인이 사실은 철도법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민영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공공 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금 아주 과도하게 하고 있다라는 의혹,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도 그리고 노사정위도 이렇게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사 관계와 노동기본권을 살리기 위한 이 국회, 특히 환노위의 역할이 저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저는 반드시 환노위에서 우선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상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제 제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상정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만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안 돼서 상정조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또한 쌍용차 사건과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야가 모두 법안을 냈습니다. 저희는 누차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내신, 제출한 법안으로 정리하고, 즉 쌍용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신 법안으로 통과 처리하겠노라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정리하고 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다음에 전교조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각종 공공 부문에 대한 이 문제들,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 등이 꼭 해결돼야만 사실상 국회가, 지금 노동부도 노사정위도 기능 부진 상태에서 국회가 나서서 노사 관계와 이 노동기본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법안소위 등에서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정리하고, 최저임금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종합 타결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노위에 상정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이 총 327건입니다. 이 중 19%인 63건만 처리됐고 상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도 48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우선 상정해서 처리될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좀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이 2월을 넘긴다 하더라도 3월이든 4월이든까지 좀 필요한 것들을 다 처리를 해서 노동부도 노사정위도 기능 부진된 상태에서 국회 환노위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몫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발언하실 분……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이완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하고……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순서입니다, 원래.

○이완영 위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나가지 마십시오.

○이완영 위원 정월대보름이라서 지역에 같이, 문화를 또 같이 향유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대체토론인데요, 우리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통합전산망 확충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직원들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정보 유출 관련해서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담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심의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장관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 간의 연계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로자들이 직접 증명서를 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절차적인 것들을 좀 쉽게 해 주는 그런 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보 연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단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정보 보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아주 강화를 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협동조합에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상 적용 법이 들어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거기 협동조합에 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근로자이겠지만 경영 주체는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게 혜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발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산재보험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영세 자영업자가 가입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누구……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리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에게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완영 위원 아니, 그 현행이 안 된다고 봐야 이 법이 뭔가 의지가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이완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입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쭙 보는 거예요, 현행 현재 제도로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 가입……

○이완영 위원 그럼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영업자로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이.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주니까 이런 데 적용이 안 되나요, 현행법으로 협동조합의 경영 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협동조합도 사업장으로 가입이 돼서 협동조합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의 직원인 근로자들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적인 이중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고용보험법상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가입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리로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완영 위원 나중에 현행법하고 검토해 가지고 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예, 알겠

습니다.

○이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한 4년간 우리 환노위에서 죽 보면 근로자의 지위 향상,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 개정안이 들어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에 역작용이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솔직히. 모성보호도 방금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가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것을 노동법에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노동부에 있을 때부터 많이 검토를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해고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업주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나갈 때는 그냥 내일모레 사표 쓰고 안 나온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예고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재사고도 지금 기업살인법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산재사고 역시도 사실은 산재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사실은 분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근로자들의 직업윤리 의무를 법에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해서 법안 제출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 국회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에는 한명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명숙 위원 그냥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한명숙 위원 이제 법안소위가 열릴 텐데 지난 번에도 전공노 전교조 법안이 올라가서 토론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음 법

안소위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룬다고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이 두 가지 법을 좀 우선적으로 심도 깊게 다루어서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시겠습니까?

○朱永順 委員 예.

○위원장 신계륜 가능하면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웃음)

○위원장 신계륜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朱永順 委員 새로 상정되는 법안은 아니지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요.

먼저 고용부장관께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부가 아니라고 보도, 해명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지난 화요일 문화일보 기사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사실이 아닙니다.

○朱永順 委員 일선 기업들은 지금까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인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까지가 연장근로의 한도였던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이르면 다음 달까지 대법원이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고용부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휴일수당 인상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법안 관련해서 저희 정부안은 아마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번 보도와 관련해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경영계는 물론 국회까지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경영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

금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노위에서도 여야 간 큰 틀의 합의를 한 바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본 위원 역시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법과 행정해석 간 간극이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규모별 단계 및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

장관, 특히 인력난과 자금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경영계도 그렇고 또 노동계도 그렇고……

○朱永順 委員 지금도 저희 방으로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 많이 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 법안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

○朱永順 委員 그래서 고용부 지침과 무관하게 대법원 판결로 하루아침에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럴 의향이 없고……

○朱永順 委員 유예기간 부여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기 때문에 더 법이 지금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朱永順 委員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朱永順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미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들으면서 입법에 임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 한 가지 더,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 김선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업살인처벌법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법을 위반하여 사망·부상 등 중대재해를 야기한 행위를 기업살인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산재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는 등 우리나라가 심각한 산업재해 국가인 만큼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발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표현이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효과를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극히 지나치고, 더욱이 현행 형법체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주가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아니면 기업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만을 두고 기업살인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생명권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의제하는 등 무리한 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업살인죄라는 자극적인 명칭에서도 물어나듯이 기업과 근로자를 마치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장관계서는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살인처벌법안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주 책임 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고, 또 처벌 수준도 지금 형법상의 형량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과도한 측면들이 있는,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산업계에서는 기업살인죄 자체를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

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이 아니고도 좋은 명칭을 붙여서 기업주들도 보호하면서 또 재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건데, ‘기업살인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고 산업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점 명심하셔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 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역구를 다니든지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 보면 가장 많은 요구가 민생에 대한 요구입니다. ‘민생 챙겨 달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인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도 민생, 민생, 민생, 참 얘기 많이 합니다. 마는 법안 심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또 정부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로만 민생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각종 노동법안들, 특수고용직 문제, 체불임금 문제, 최저임금·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민생법안의 핵심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앞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노동부 소관 처리 현황을 보니까 총 390건 중에서 처리 비율이 16.1%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쌓여 있고 현장에는 이것 때문에 혼란이 심하고 민생법안에 대한 요구는 강하고…… 현장은 아우성인데,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우리 환노위에서 실제로 현재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정부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즉시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고·전임자 문제 17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 2012년 5월에 문재인 의

원이 발의한 것, 14년 1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20개월째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 차별 해소 문제 19개월째 지금 담보 상태고요, 정리하고 요건 20개월째 이렇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총리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이윤 주도 성장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도 부정은 하지 않으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성장정책 자체가 전환되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노동정책의 전환, 임금정책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야 대표 이번에 공히 상임위 강화를 한목소리로 냈습니다.

황우여 대표 '상임위 산하에 소위 더 설치하고 정책청문회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고, 김한길 대표 '상시 국회, 상시 국감 하자'라고 이번에 주장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상임위에서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국민들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 일정 하루 잡혀 있습니다. 법안 심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안소위 일정 늘려야 합니다. 2월 국회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더 늘려서라도 그동안에 지금 수십 개월씩 방치되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집중해서 심의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노위에 별도의 소위, 민생소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현안들, 이번 2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민생소위 설치해서 당장의 현안 사항들, 현장에서 지금 현재 혼란과 아우성들을 들어서 체불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특고 문제 등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등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집중해서 개최함으로써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야 간사님들이 신계륜 위원장님과 진지하게 협의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을 잘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은 생략하실 거지요?

○최봉홍 위원 한마디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제안을, 이 문제를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환노위 인사말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90여 개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이유는 그 현안 하나하나가 노사 간에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학계를, 교수들 한 20명을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지난번 환노위 때 인사말에 동의는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글을 써 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5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어제 모두에 말씀드린, 장관님께 어제 국정 질의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도 거기에 노동부가 협조해 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전부 정리하는 데는 2월 달 국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안이 되면 결의문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좀 협조해 가지고 우리나라 법 모태를 전부 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

당장 사용자 개념 하나만 바꾸어도 우리 법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292개라 합니다. 292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동법이 조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조직도 없습니다. 지금 주영

순 위원이 하시는 말씀도 중소기업이나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 문제고, 지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노동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90% 노동자들의 문제 때문에 급히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자체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을을 위한다 하는데 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강한 을도 있고 약한 을도 있고 한데 진짜배기 을이 누구인지 그것을 좀 분석해서 가지고 정책 만드는 데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뭐라 한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임기응변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은 바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노사정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장관님, 차관님이 밤을 새시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 안 되면 노사정 간에라도 모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촉매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게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위원회 활동을 마치기 전에 용기 있게 해야 할 일이 좀 있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만 종결하기 전에 여야 위원들 간에 제 방에서 좀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은 구별 없이 제 방으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대체토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 토론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64항까지 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소위 심사 대상 안건의 선정 등 심사 방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담은 자료를 행정실에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법안심사가 어디까지 되었고, 어디까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일람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오늘 심의한 의안 중 의사일정 제45항 기업살인처벌법안과 제51항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여 공청회가 신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홍영표 위원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작성하여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시46분)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5.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노사

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회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시다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사정 관계 악화로 인해서 중단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게 하고, 노사 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와 공무원 노동관계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의제 설정 및 노사정 소통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법률상 형식은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소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여야 각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고용노동부장관, 노동계 대표(한국노총위원장·민주노총위원장) 그리고 경영계 대표 2인(경영자총협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을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을 의제 중심으로 논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시적 기구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직접 맡겠습니다.

활동기한은 2014년 4월 15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이관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가 맡도록 합니다.

두 가지 단위를 운영합니다. 대표자회의, 대표교섭단으로 운영합니다.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대표자회의는 대표교섭단의 논의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면 바로 회의를 시작해서 구성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소위원회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해 줄 것

을 사법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활발하게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회법에 따른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65항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계륜** 예.

○**김성태 위원** 가결 전에…… 두 달간 소위원회 논의 이후에 이 논의 의제와 또 특히 국회의 참여하는 위원들 빼고 실질적으로 이 구성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는 노사발전위원회에 이렇게……

○**이종훈 위원** 노사정위원회.

○**김성태 위원**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한 전제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당연히 그렇게 전제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장님, 정부 입장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가결된 다음에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차피 정부도 여기에 참여를……

○**위원장 신계륜** 그러니까 가결시킨 다음에 의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정부 의견 들어 보고 합시다.

○**위원장 신계륜** 가결 다 하고 나서 의견을 들으면 되지요.

○**최봉홍 위원** 장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계륜** 가결하고 나서, 위원회 의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노동부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우선 당장 어떻게 보면 노정 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모색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정부에서도 여러 번 노사정 대화 파트너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노사정이 직접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화기구이기 때문에,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도 역시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논의하시기 위해서 상정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노사 간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회적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상당히 의견이 접근된 사안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노사 간의 이해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경우에 저희 정부의 그동안의 노사 간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명회, 지침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입장들을 그동안에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일단 입법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2월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시급히 처리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도 좋고 더 안전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지금 노사 모두 입장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한국노총도 빠져 있고 민주노총도 빠져 있는 그야말로 절름발이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한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다리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촉발시켜서 그 논의 자체의 성과

를 전체 노사정위원회에 이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정식으로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모든 논의가, 노사 간 이견이 있지만 그 논의를 거침으로써 보다 더 탄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훈 위원** 지금 장관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이것이 가동이 되면 이번 2월 국회의 법안 심사소위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될까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법안심사소위는 운영이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한 해서 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니 마는 그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성심성의껏 여야 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여러 가지 노사 현안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국회가 나서서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해 보고자 이 소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의제들은 아닙니다. 마는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위와 무관하게 법안심사소위는 일정대로 하고 또 최대한 야당도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합의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번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에서 합의된 사안들은 4월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더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다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노사 현안, 갈등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의 구성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노사정의 대화에 새로운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간사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쉬운 문제가 아닌 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절차라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소위원회 구성 내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노사정 사회적논의 축진을위한 (4인)	김성태 이종훈	새누리당(2)
	◎신계륜 홍영표	민주통합당(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김경협 김상민 김성태 서용교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완영  
 이종훈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차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이재현  
 환경정책실장 백규석  
 환경정책관 이운섭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 최홍진  
 물환경정책국장 오종극  
 상하수도정책관 김상배  
 자연보전국장 남광희  
 자원순환국장 홍정기  
 대변인 이민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유승직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차관 정현욱  
 기획조정실장 심경우  
 고용정책실장 이재홍  
 노동정책실장 권영순  
 노동시장정책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 황보국  
 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수영  
 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공공노사정책관 송문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중길  
 정책기획관 김재훈